

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5-21호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·등사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·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9월 22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·등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대법원규칙이 시행됨에 따라, 현행 규정 중 종이문서를 전제로 마련되어 전자문서 이용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, 전자문서의 열람, 등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사건관계인 등의 열람 및 등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사건관리담당관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실

- 전자우편 : islbilbc@korea.kr

- 팩스 : (02)6320-0268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실[(02)6320-0337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cio.go.kr>) <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>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